

# 定 款

## 제1장 총칙

### 제1조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피씨기술협회(Korean Precast Concrete Institute; 약칭 KPCI, 이하 “본 협회”라 한다)로 칭한다.

### 제2조

본 협회는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고, 건축시스템의 피씨 기술 향상 및 보급에 노력하며, 국제협력을 도모하여 건축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본 협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오피스텔 1110호에 둔다.
2. 본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소를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건축 구조 및 시스템의 피씨에 관한 조사연구
2.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기준 등의 작성
3.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기술 및 유지관리의 지도
4.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기술자의 양성
5.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6.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회지 및 도서의 간행
7.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국제 교류
8.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사업의 수탁
9. 국토교통부장관이 피씨 건축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10.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 (종류)

본 협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및 특별회원(이하 “정회원”이라 한다), 명예회원으로 한다.

1. 개인회원은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씨구조에 관한 관심이 높으며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한 자
2. 특별회원은 건축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법인
3. 명예회원은 피씨구조 관련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룩하였거나 본 협회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

### 제6조 (입회)

1. 본 협회에 입회하려고 하는 자는 명예회원을 제외하고 소정의 입회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추대된다.

### 제7조 (입회비 및 회비)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하였을 경우
2. 제명된 경우
3.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
4. 금치산 또는 준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5. 사망 또는 실종선언을 받았을 경우
6. 법인 또는 단체가 소멸하였을 경우

### 제9조 (탈퇴)

1. 회원은 소정의 탈퇴원을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의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총수 2/3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결 전에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본 협회의 정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11조 (납입금의 불반환)

기납 입회비, 회비 및 그 외의 기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3장 임원 등

#####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5명 이내
3. 이사 70명 이내 (회장, 부회장 및 상근 임원 1명을 포함한다.)
4. 감사 2명 이내

##### 제13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법인의 경우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상근임원은 회원이 아닌 자로서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다른 직은 겸임하지 아니한다.
4. 이사에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이사 및 감사는 상호 겸임할 수 없다.

##### 제14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협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및 결석 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협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다음에 열거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산 및 회계를 감사한다.
  - (2) 재산, 회계 및 업무집행에 있어서 부정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전호의 보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한다.
  - (4)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3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결 또는 증원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각각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결 전에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 제17조 (임원의 보수)

1.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 무보수로 한다.
2.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도 공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18조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협회는 약간 명의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3.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4장 총회

### 제20조 (총회의 개최)

1. 본 협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 (2) 정회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 (3)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 제21조 (총회의 기능)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의결
4. 기타 본 협회의 해산 등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2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심의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적어도 7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3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제24조 (개회)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제25조 (의결)

1. 총회 의결사항은 본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로 결의하고,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총회 안건이 본 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이거나 금전 및 재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의장 또는 회원 자신은 의결권이 없다.
3. 회장은 이사회의 부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제26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정회원의 재적 수, 출석자 수 및 출석자 명
3.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4. 의사진행 경과의 개요 및 그 요지

### 제5장 이사회

#### 제27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28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상근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신규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요사항

#### 제29조 (종류 및 개최)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제29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적어도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30조 (소집)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제31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제32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제33조 (의결)

1.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본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이사회의 안건이 본 회와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이거나 금전 및 재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 제34조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이사의 재적 수, 출석자 수 및 출석자 명
3.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4. 의사진행 경과의 개요 및 그 요지

## 제6장 위원회

### 제35조 (위원회)

1. 회장은 본 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장 자산 및 회계

### 제36조 (재산의 구성)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에 열거한 것으로 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찬조금 및 찬조한 물건
3. 자산으로 발생하는 수입
4. 사업으로 인한 수입
5. 기타 수입

### 제37조 (자산의 관리)

본 협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고, 그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정한다.

### 제38조 (사업년도)

본 협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당해 년 12월 31일에 끝난다.

### 제39조 (사업실적 및 계획)

1.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작성 하여야 한다.
2.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는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도 동등하다.
3.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40조 (임시예산)

1. 총회에서 신 사업년도의 예산이 결정될 때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 사업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수입 및 지출할 수 있다.
2. 전항의 수입 및 지출은 새롭게 성립된 예산의 수입 및 지출로 간주한다.

### 제41조 (특별회계)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 제4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43조 (해산)

본 협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한다.

### 제44조 (잔여 자산의 처분)

본 협회가 해산할 경우 가지고 있는 잔여 자산은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

## 제9장 사무국

### 제45조 (사무국 및 직원)

1.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및 직원 약간 명을 둔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46조 (사무국장의 임기)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7조 (장부 및 서류)

사무국에는 항상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원명부 및 회원의 이동에 관한 서류
3. 이사, 감사 및 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
4. 인가 및 등기에 관한 서류
5. 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서류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7. 자산, 부채 및 자산상황을 나타내는 서류
8. 기타 필요한 장부 및 서류

## 제10장 기타

### 제48조 (위임)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 칙(2006.9.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8.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5.7.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1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